탄 원 서

항소심 · 제 1 심 무죄 유지 및 검사 항소기각 요청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10-1 부 귀중
사건번호	2026 노 2255 (제 1 심: 2025 고합 1602)
피고인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전 외교부 제 1 차관)
관련 혐의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
탄원 취지	검사의 항소기각 및 제 1 심 무죄판결 유지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제 1 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지되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특정한 정파에 유리한 결론을 부탁드리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덜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증명된 행위와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채수근 해병의 순직과 그 후 수사를 둘러싼 의혹이 무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상을 밝히는 일과 개별 피고인에게 범죄를 인정하는 일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 1 심 무죄판결의 이유와 검사의 항소 주장을 정확히 대조해 주십시오.

2026 년 9 월 1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호진 전 실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 1 심은 주호주대사 임명이라는 공적 인사절차가 실제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그 목적을 공유한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저는 제 1 심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의 결론도 당연히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1 심이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구성요건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항소이유가 그 판단의 어떤 부분을 오류라고 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 증거의 의미뿐 아니라 그 증거를 종합했을 때 가능한 추론도 살펴주시되, 전체적인 의혹의 크기로 피고인 개인에게 필요한 증명을 대신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2. 임명 논의·출국금지 인식·실제 출국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공개된 재판 경과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의와 인사절차가 진행된 시점,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시점, 부임과 귀국 시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수사 상황과 출국 제한 여부를 어느 단계에서 알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인사 관련 행위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인사 검토·전달·협의에 실제 참여한 시점, 보고받은 자료의 내용, 그때 알고 있던 수사 상황, 이후 관여한 후속 조치를 각각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결과적으로 논란을 낳았다는 사정이 그 이전부터 수사 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직접 또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그 무게 역시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3. 외교인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과 범인도피의 공모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교부 제 1 차관을 지낸 피고인이 대사 인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상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그 직무의 성격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대상자의 해외도피를 의도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범죄 실행의 의사를 함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문구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전달했는지, 인사검증 또는 공관장 임명 절차의 어떤 결정에 실질적인 재량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과 결재·보고 경로, 당시 작성된 문서, 실제 부임 조치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주시고, 다른 피고인의 인식이나 행위를 장호진 전 실장에게 그대로 옮겨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 범인도피죄의 행위와 고의는 구체적인 수사 방해 가능성 속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해외공관장 임명은 신분과 부임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인사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인 잠적이나 소재 은닉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 임명절차라고 해서 언제나 범인도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이 실제로 수사 또는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해당 피고인이 이를 알고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그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장호진 전 실장의 행위를 범인도피에 대한 가담으로 평가하려면 수사 방해라는 목적에 관한 인식,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 실행행위, 관련자와의 의사 연결이 어떠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해외근무 가능성, 임명에 따른 수사 일정의 불편, 사후에 제기된 정치적 논란을 이 요소들과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5. 국가공무원법 관련 공소사실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서 인사검증과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에 관한 위법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가 적절했는지와, 피고인의 특정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행정처리 또는 직무상 비판 가능성이 곧바로 형사범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된 법조문,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어진 직무상 의무, 그 의무에 반하는 구체적 행위, 필요한 고의가 각각 증명되었는지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 개인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사 과정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공소사실을 채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6. 의혹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지켜주십시오.

검사가 주장하는 조직적 관여의 정황, 여러 피고인 사이의 연락, 인사절차에 나타난 특이한 사정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관여 범위가 통상적인 직무수행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설명을 배척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부분도 함께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이 정한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기준입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장호진 전 실장의 범인도피 고의 또는 별도 공소사실의 성립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제 1 심 무죄판결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맺음말

저는 공소장 전문과 제 1 심 판결문·항소이유서의 모든 문장을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께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의 판단을 변경하려면 장호진 전 실장에게 실제로 무엇이 증명되는지 명료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원칙을 시민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기록 전체와 항소심의 추가 심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제기된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을 각각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 1 심 무죄판결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어떤 결론이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선택)　　생년월일: _____